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「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발령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4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「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」 을 아래와 같이 개정 · 발령하고자 합니다.

○ 개정 주요내용

- 가. 보건의료원을 정의하는 지역보건법의 조항이 변경되어 반영
- 나. 처방 ·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에서 감염병 분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약품분류표의 용어로 현행화
- 다. 재검토기한 재설정

○ 시행예정일: 2021. 1. 1.(금)

- 붙임 1.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.  
2. 「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」 개정 전문 1부. 끝.

주무관	서희선	행정사무관	박영운	보험약제과장	전결 2020. 12. 24. 양윤석
협조자					
시행	보험약제과-4333			접수	
우	3011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			/ 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http://www.mohw.go.kr</a>
전화번호	044-202-2754	팩스번호	044-202-3935	/ <a href="mailto:huisseonseo@korea.kr">huisseonseo@korea.kr</a>	/ 비공개(5)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					